

게르츠 대 로버트 웰치사 사건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게르츠 대 로버트 웰치사의 판결은 뉴욕 타임즈 사 대 설리반 사건에서 정의된 현실적 악의의 법리와 공적 인사 또는 공적인 대상의 개념을 뒤바꾸어 놓은 사례로서 주목된다.

1968 년 시카고 경찰관인 누시오(Nuccio)는 넬슨(Nelson)이라는 청년을 사살하였다. 주검사는 누시오를 살인과 제 2 급모살죄로 기소하였고 넬슨의 가족은 평판이 좋은 엘머 게르츠(Elmer Gertz)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누시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주간지인 아메리칸 오피니언은 1966 년 3 월호에 「음모 : 리처드 누시오와 경찰에 관한 전쟁」이란 제하에 이 사건의 원고측 변호사인 엘머 게르츠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아메리칸 오피니언지는 존 버치 협회(John Birch Society)의 견해를 대변하는 월간지로서, 160 년대 초반에 이미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 지방법규강화기구를 모함하려는 음모를 경고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공산독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동지는 이러한 위험에 관심을 갖고있는 공중을 일깨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누시오의 살해사건 공판에 대한 기사를 싣게 되었던 것이다. 아메리칸 오피니언지의 편집장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지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지에 게재된 넬슨의 변호사인 게르츠에 관한 기사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고, 더구나 이 기사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게르츠가 사건에 대한 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이었다.

게르츠는 약 15 년전부터 전국법조인협회(National Lawyers Guild)의 회원이자 임원으로 일해 왔으나 게르츠나 그의 단체가 1968 년에 시카고에서 있는 시위행위를 주도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또한 게르츠가 레닌주의자라거나 전위적인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더구나 산업민주주의 막스동맹의 회원도 아니었고, 범대학사회주의단체의 회원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메리칸 오피니언 지의 편집장은 게르츠에 대한 비난을 검증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단지 편집장은, 「필자가 누시오 사건에 대해 심층

조사하여 결론을 맺게 된 것」이라는 주석을 달았을 뿐이다. 이 잡지에는 관계기사와 함께 게르츠의 사진이 실렸으며, 「붉은 조합의 엘머 게르츠, 누시오를 유도하다」라고 하는 사진설명이 붙여져 있었다. 오버트 웰치사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시카고 전역에 걸쳐 배포하고 가두판매를 하기도 했다.

게르츠는 아메리칸 오피니언지의 기사가 시민이자 법조인인 자신의 평판에 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일리노이주 북부지원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은 본질적 명예훼손(libel per se)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에 덧붙여 법정은 이 사건에 뉴욕 타임즈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심지어 원고가 공적 인사 또는 공적인 대상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공중의 쟁점에 관한 논쟁을 보도하는 기자의 특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피고측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법정은 배심원의 평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인 게르츠는 설리반 사건에 적용했던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본 사건에 적용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를 하였다.

제 7 순회 항소심은 1 심판결 중 공적 인사에 관한 부분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긴 했으나 일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가 공익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공표한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항소심은 피고가 설리반 판례에서 정의된 현실적 악의를 갖고 행동했는가 하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를 원고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일심판결에 동의를 했다.

사실 아메리칸 오피니언지의 편집장은 그 기사에 존재하는 잘못된 부분에 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고 또한 기사에서 게르츠에 관해 알게 된 사실 이외에는 아무 것도 몰랐다. 따라서 본 사건에 있어서 확고는 그러한 허위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항소심은 1 심판결에 동의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연방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항소심 판결은 파기되고 새로운 공판을 열도록 판결이 났다.

포웰(Powell) 재판관이 대표로 집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사인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공표했을 때 언론에서는 그러한 언사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 1 조에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 보호를 한다는 조항은 없고 또한 헌법에 보호할 가치를 밝히고 있지 않다. 공적인 쟁점에 관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부주의한 실수가 대단히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뉴욕 타임즈 사건은 공적인 인사의 명예훼손에 관해 헌법적 보장의 한계를 정의했다. 공중의 주의를 받고 자신들의 성공과 유명도에 따라 공적 인사가 된 사람들은 공적인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의 평판에 대해 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진보에 대한 부주의한 실수나 잘못된 지식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명예훼손적 잘못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법리의 적용은 극단적으로 언론의 자기검열에 대해 강력한 해독제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의도적인 피해가 있을 때 원고에 대해 뉴욕 타임즈의 법리에 존재하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보상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당 법정은 언론이 개인의 평판에 대해 피해를 가졌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뉴욕 타임즈에 적용했던 것과는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공직자와 공적 인사들은 사적인 인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사적인 인사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피해를 보게 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당법정은 사적인 개인의 평판에 대해 명예훼손적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해 법적 구제를 위해 적용한 주의 명예훼손법은 그 이해가 다르므로 그 적용을 보류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따라서 사적인 사람에게 명예훼손행위를 한데 대해 뉴욕 타임즈의 법리를 적용하려고 공적이거나 사적인 이해를 구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공적이거나 사적인 이해의 쟁점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잘못에 대해 피해를 입는 사적인 인사의 평판은 뉴욕 타임즈의 가혹한 법리를 요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적 인사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이유로부터 사적인 사람을 보상하기 위한 주의 명예훼손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검토해 볼 때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 법정에서 공적이거나 일반적인 이해와 관련되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명예훼손 실수를 범한 언론단체의 장들은 자신들 주장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대한 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명예훼손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현실적인 피해를 증명함이 없이도 손해배상을 지불케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케 하도록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 이상으로 언론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당법정은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을 부과하지만 않는다면 주정부는 스스로 사인에게 명예훼손의 피해를 준 언론에 대해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도록 정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노력은 사적인 인사에게 잘못된 평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를 보상하는 주의 명예훼손법에 나타난 사항들과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진실에 대한 부주의한 실수나 잘못된 지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원고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법정이 현실적 피해를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 피해는 단지 주머니에 있던 물건을 분실했다는 정도에 한정되지 않을 정도로 말하면 충분하다. 실제로 주체적인 현실적 피해의 일상적인 형태는 평판에 손상을 끼친 명예훼손적 잘못에 의해 성립되는 수가 많다. 이것은 또한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며 개인적인 비방이나 정신적 분노와 고통을 주게 되는 것도 포함하게 된다……

원고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전문직업에 종사해 왔는데 특히 지방시민단체의 임원과 여러 전문직업단체에 종사해 왔다. 그리고 그는 여러 책을 발행하기도 했고 법률지에 많은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비록 원고가 특정사회에서 어느 정도 유명해지기는 했으나 지역사회에서 명성을 얻거나 유명인사가 되지는 못한다. 공판정에 출석한 배심원들의 누구도 이 사건이 제기되기 전에는 원고에 관해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는 이러한 배심원들의 반응에 대해 지역민들이 원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당법정은 시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전문직종에 종사하였다고 그에게 공적 인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고가 지역사회에서 얻은 명성이나 유명도에 관한 명백한 증거의 부재와 원고가 지역의 행사에 관여한 모든 생활들을 고려할 때 그를 공적 인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기의 이유들로 해서 원고는 공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원고는 누시오 사건에 대한 조사관의 심리업무에 최소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이것은 단순히 원고가 사적인 변호업무를 위해 관여했던 것뿐이다. 원고는 누시오의 형사소설사건에 관해 아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더욱이 언론과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논의한 적도 없고 언론이 공표한 사실을 인용한 적도 없었다. 원고는 분명히 이러한 공적인 쟁점의 소용돌이에 끼여들지 않았었다.

따라서 당법정은 뉴욕 타임즈 법리가 이 사건에 부적절하게 적용되었고 재판부가 피고측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것도 잘못이라고 결정을 내린다…… 그러므로 당법정은 항소심 판정을 파기하고 당법정의 의견에 따른 새로운 공판을 열 것을 명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스튜어트(Stewart), 마샬(Marshall), 블랙델(Blackmun)과 렌퀴스트(Rehnquist) 재판관은 동의를 하였으나 버거(Burger) 대법원장과 더글라스(Douglas), 브레난(Brennan) 재판관은 반대를 하였다.

브레난과 더글라스 재판관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 매스 미디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게르츠 사건에 대해 항소심 결정을 확정짓기를 원했다. 특히 브레난 재판관은 공적인 쟁점에 관여한 사람을 공적 인사로 보는 기준은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나 그 사건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공적 이해에 관여한 사인의 모욕죄를 다루는 본 사건에서 공적인 사향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사례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브레난 재판관은 또한, 공적이거나 일반적인 이해의 사항들은 갑자기 사사로운 사람이 관여하거나 어떤 재연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건을 선택하여 관여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원고를 일정한 상태에 있는 공적 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했다. 따라서 그는 항소심 결정을 확정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이트(White) 재판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 전통적인 명예훼손법에 따라 오늘 이사건의 결정이 좌우되는 것은 그 충격이 명백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 더이상 원고는 모욕적인 명예훼손의 피해를 증명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거나, 본질적으로 행위적인 비방을 증명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을 수만도 없다. 덧붙여 말하면, 원고는 반드시 발행인의 기사에 대해 과실적인 행위를 입증해야만 하며, 의도적이거나 부주의한 잘못, 그리고 과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가 없다면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현실적 피해를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여전히 봉착하게 된 것이다……당법정은 어떤 발행물이 본질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판정하기를 거부하며, 또한 현실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의 위험이 발행인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루기도 거부한다.

명백하게 원고가 과실이나 다른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다. 아마도 그러한 노력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또한 원고에게 자신의 평판에 대한 피해를 입증한다고 해서 명목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기는 어렵다…… 이 사건은 원고가 발행인의 간행물에서 어떠한 과실이나 잘못을 입증하는데 실패한다고 해서 각하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본인은 항소심 결정을 파기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원상태로 되돌린다.」

화이트 재판관은 뉴욕 타임즈에 적용되었던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경우에는 사인의 평판이 해를 입은 데 대해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1974년 6월 25일에 결정이 되었는데, 미연방대법원은 6 : 3의 표결로 항소심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하도록 결정했다.